

2020년도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4. 22.(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53건(안건번호 제2020-12710호~1358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2710호~12713호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뮤지컬 영상, 음원 등의 판매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12714호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뮤지컬 음원(MR) 판매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댓글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2715호, 12716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2717호~12733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영화, 드라마 등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이고, 안건번호 제2020-12734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국내 및 해외 음원 등을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직접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심의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 해석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심의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8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11건 (안건번호 제2020-1636호~1646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5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6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6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개 안건 (1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12710호~13580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353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710호~1271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

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정보'라는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시정권고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710호~12712호는 뮤지컬 '밀녹' 영상, 음원 판매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이용자는 "☆☆☆ ☆☆ ☆☆☆ ☆☆ ☆☆☆", '○○○ ○○ ○○ ○○ ○○○ ○○ ○○'라는 제목으로 뮤지컬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과 음원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함.

(안건번호 제2020-12710호~12712호 민원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 ○○ ○ ○○○○○ ○○○○○○ ○○○○, ○ ○○○ ○○○ ○○○○○ ○ ○○○○ ○.", "◇◇◇ ◇◇◇◇ ◇◇◇◇ ◇◇◇◇◇ ◇◇◇◇◇ ◇◇◇◇◇ ◇◇◇◇◇ ◇◇◇◇◇ ◇◇◇◇◇ ◇◇◇◇◇ ◇◇◇◇◇"라는 내용으로 신고함.

(안건번호 제2020-12711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면서)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함.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로 보도록 하겠음.

(안건번호 제2020-12711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는 내용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상품태그에는 '#△△△', '#▽▽▽▽', '#■■■■■■■■',

‘#▲▲▲▲’, ‘#▼▼▼▼▼▼▼▼’가 있음.

심의위원회는 직접증거 없이 댓글 내용, 댓글 개수와 같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 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다만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한편,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상품문의, 상점후기 란에 등록된 내용이 없어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판매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음.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713호, 12714호는 뮤지컬 음원(MR) 판매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2명의 이용자가 “★★★★★★ ★★★★★”, “◁◁◁◁◁ ◁◁ ◁◁ ◁◁◁◁◁◁◁”라는 제목으로 뮤지컬 음원(MR)을 판매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각각 작성함. 참고로 ‘◀◀◀◀◀’에서 해당 뮤지컬의 공연실황 앨범이 판매 중에 있음.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뮤지컬은 ‘결합 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곡들은 뮤지컬의 구성부분이지만,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하고 개별적인 이용이 가능하므로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될 것임.

심의안건 게시물에서 저작물 이용은 직접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 무단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적·변용적 이용행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심의안건 게시물에서 이용한 저작물은 사실적·기능적 저작물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0-12714호 후기 내용에 따르면 음원(MR)을 유체물 형태로 발송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할 것으로 생각되나 USB에 음원(MR)을 담아서 배송한 것인지 해당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12710호~1271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12710호~12713호는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12714호는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보이는 사안임.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12710호~12713호는 부결하되, 안전번호 제2020-12714호는 뮤지컬 음원 판매가 실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12710호~12713호는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법복제물의 실제 전송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건임. 안전번호 제2020-12714호는 댓글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이 인정되는 건으로 시정권고함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710호~1271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2714호는 계

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715호, 12716호는 2020. 3. 23., 2020. 3. 31., 2020. 4. 1.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는 일본 □□□□에서 1999. 10. 20.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2715호, 1271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게시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같은 의견임.
- A 위원: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2715호, 1271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0-12717호~12734호는 온라인서비스

(해당 사이트를 제시하면서)해당 사이트에서 ‘한국음악’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음. 목록에서 ‘□□□ □ □□□□ □□ □□□□ □□□ □□□’ 게시물을 클릭해보도록 하겠음. ‘□□□ □ □□□□ □□ □□□□ □□□□□□’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링크에 접속해보도록 하겠음. 링크를 통해 접속한 게시물에는 “㉠㉠㉠ ㉠㉠㉠㉠㉠㉠ ㉠㉠㉠㉠㉠㉠”라는 내용이 있음.

(해당 음원을 재생하면서)실제로 해당 사이트에서 음원 다운로드가 가능함.

저작권침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게시한 행위 자체가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 내 저작권침해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등 정보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대법원은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링크 글을 게시한 자의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 방조책임을 부정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서울고등법원은 링크행위에 대한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음.

해당 사이트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하더라도 게시글 작성 권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심의대상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 복제물등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음.

저작권법상의 시정권고 제도에 관한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전부개정) 제34조에서 부정복제물 등의 수거조치 등이 규정되었으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2. 12. 30. 일부개정) 제34조 제5항으로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각호의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거나 게시된 경우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거

부·정지 또는 제한 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온라인에서의 행정조치를 최초로 도입한 바 있음. 이 때 행정조치의 수단으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보임.

그 후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6. 10. 4. 일부개정) 제34조의3에서 최초로 시정권고제도가 도입된 바 있는데 당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하는 복제·전송중단요청제도와 동일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하게 되어 이종의 절차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부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로 시정권고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것임.

더구나 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다른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시정권고제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폐지와 함께 구 저작권법(2009. 4. 22. 일부개정)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한편 저작권법상 온라인상의 행정조치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전부 개정) 제133조에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에 관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간 파일공유 등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행정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보임.

또한 구 저작권법 제133조 제4항의 행정조치는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모두에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파일 공유 등 서비스 이용자

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를 상대로 일정한 조치 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행정조치가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저작권법 제133조의2와 제133조의3의 법 문언에서 보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복제·전송자'를 구분하여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계정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비교법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규정하는 미국에서도 학계나 법원은 자신의 임원이나 고용인에 의하여 저작물을 저장하는 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 의한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국한된다고 할 것임.

심의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아니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사안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경우와 비교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더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본인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법 감정에 반할 수 있는 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33조의3 해석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복제·전송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고도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 온라인서비스 이용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보다 그 불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자에 대한 시정권고가 허용되는 이상 전자에 대한 시정권고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심의위원회의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임.

이하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에 관해 '2018년도 제4회 전체심의위원회 회의록' 일부와 '○○○ 심의위원의 연구보고서'를 첨부해두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2717호~1273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해당 안건들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게시물과 관련되어 있어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2717호~12734호는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대한 시정권고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D 위원: 같은 생각임.
- A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2717호~12734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심의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2735호~13580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음악 'Senorita (가수: Shawn Mendes)'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

건번호 제2020-12982호의 음원파일은 2019. 6. 21. 발매된 곡으로 앨범 'Señorita'에 수록되어 있음. 'Shawn Mendes' 외 7인이 해당 음원을 작곡하였음. 웹하드에서 'Billboard Hot 100 2020-02-29'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약 71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4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방송 '진정령'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095호는 웹하드에서 '진정령 23화~24화'를 11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중국 텐센트TV 채널에서 2019. 6. 27.부터 2019. 8. 20.까지 방영한 총 50부작의 중국 드라마임. 해당 드라마의 원작은 소설임. 해당 영상물에는 중국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방송물은 최근 케이블 TV에서 자주 방영하고 있음.

(영화 '닥터 두리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05호는 2020. 1. 8.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20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4,500원에 대여, 9,9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영상물에는 smi 파일의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영화 '스파이 지니어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14호는 2020. 1. 22.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20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네이버 시리즈on'에서 10,90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영상물에는 srt 파일의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영화는 최근 불법복제물로 많이 보이고 있음.

(영화 '1917'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38호는 2020. 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20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1.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31.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정직한 후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237호는 2020. 2. 12.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204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1.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251호는 2020. 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5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1.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4. 7.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참고로 배우 '전도연'이 주연인 영화임.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269호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8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4. 21. 현재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해당 영상물에는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자막은 자체 자막인 것으로 보임.

(음악 '시작 (가수: 가호 (Gaho))'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351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1. 발매된 곡으로 앨범 '이태원 클라쓰 OST Part 2'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이태원 클라쓰 OST'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약 8곡을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은 2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참고로 방송 '이태원 클라쓰'는 JTBC 채널에서 2020. 1. 31.부터 2020. 3. 21.까지 방영한 총 16부작 드라마임.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491호는 웹하드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1화~5화'를 43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방송물은 tvN 채널에서 2020. 3. 12.부터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영 중인 총 12부작 드라마임. 참고로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12735호~1358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작지 않아 보임.

- C 위원: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 A 위원: 해당 안전들은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735호~13580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710호~12713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2717호~12734호는 전체위원회에 상정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20-12714호~12716호, 제2020-12735호~1358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8쪽부터 2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636호~1646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5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나머지 6개 안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6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개 안건(부결 사유 중복 1건)}은 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29.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